붙임 1 **태극기(弔旗) 달기 추진 홍보자료**

경술국치일에 조기(弔旗)를 달아,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

◇ 오는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.

☆ 우리 모두 태극기(弔旗)를 게양하여 나라를 잃은 슬픈 날을 기억합시다. 또한,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.

《 조기(弔旗)는 이렇게 답니다 》

☆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.

*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,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내려 게양

☆ 조기(弔旗)는 경술국치일 당일에만 게양 합니다.

☆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, 경술국치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.

☆ 심한 비·바람(악천후)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,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.

《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》

☆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(각 세대의 난간)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.

※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,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람

《 태극기 구입 》

☆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(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 등),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go.kr)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☆ 오염·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,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3-08-05 조례 제 4586호
(일부개정) 2015-07-17 조례 제 4952호
(전부개정) 2020-01-13 조례 제 645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민국 국기”(이하 “국기”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.
2. “국기선양”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3. “다중이용건축물”이란 「건축법시행령」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.
4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가 출자·출연·보조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·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②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5,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제4조(국기선양 계획의 수립) 도지사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.

1. 국기에 대한 이해
2.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
3. 국기 보급사업
4.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

5.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
6.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·홍보
7.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5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기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
2. 경기도 도민의 날(10월 18일)
3. 경술국치일(8월 29일)의 조기게양
4. 그 밖에 경기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은 경기도민(이하“도민”이라 한다)의 자율에 따라 매일·24시간 게양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) ① 도, 시·군, 공공기관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.
1. 공항·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
2. 대형건물·공원·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
3.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

② 국기가 심한 눈·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.

③ 그 밖에 도지사, 시장·군수,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상시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.

제7조(국기 보급사업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권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국가유공자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고엽제 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5.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) ① 도지사는 국기 게양에 관한 도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내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 등의 복지 관련 시설
2. 그 밖에 도지사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② 제1항에 따라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9조(국기의 점검·관리 등) ① 도지사는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·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·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·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도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며, 시·군 민원실,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이 설치·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·홍보)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·홍보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도민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2020.01.1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